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2. 1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11.1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8.11.20.

다. 상정일자 :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8.12.11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문화진흥과장 장재원】

가. 제안이유

여성의 생리라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감안하여, 가임기 여성의 마포아트센터 수영장 월 사용료를 할인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13조의3(할인) 제11호

-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.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수영장 사용료에 한정한다.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개정안은 여성의 생리라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감안하여, 가임기 여성의 마포아트센터 수영장 월 사용료를 할인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제13조의3(할인) 제11호에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일 경우 1개월 이상의 수영장 사용료 할인 규정을 조문으로 신설하는 내용은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본 조례안의 목적에도 부합하며 양성평등 노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